



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입니다!!

요양보호사의 업무입니다

신체활동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사, 개인위생(세면, 구강관리, 옷 갈아입기, 머리감기, 몸 씻기 등) - 몸단장(머리 손질, 손·발톱 정리, 옷 갈아입기 등) - 체위변경, 이동 도움, 화장실 이용(이동변기사용, 기저귀 교환 등) - 신체기능 유지·증진 등
인지활동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상 훈련, 기억력 향상 활동,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, 일상생활 함께하기
일상생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출동행(장보기, 산책, 물품 구매, 관공서, 병원 이용 등) -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식사준비, 설거지 등
정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말벗, 격려, 위로, 의사소통 도움 등

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돼요~!!

■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(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)에 따라,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.

요구금지 행위	예 시
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, 빨래, 장보기, 청소 - 김장 도움, 제사·차례 음식 준비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- 가족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 업무지원
수급자,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게 보기, 부업에 참여하기 - 배달하기, 가게 청소, 가게 설거지, 가게 음식준비 등
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- 잔디 깎기, 텃밭 매기 등

품격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과 가족, 요양보호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

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직입니다

- **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**
 -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며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.
 -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.
- 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(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)

■ **요양보호사와 수급자(가족)는**

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

-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“요양보호사님” 또는 “선생님”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,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됩니다.
 - 성적인 농담,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(장기요양요원의 보호)

■ **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**

- 요양보호사와 수급자(가족)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

~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언제나 든든한
국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~